

용인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

제정 2013. 5. 7 조례 제1295호
일부개정 2021. 12. 31 조례 제2241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용인시 시정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·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용인시명예시민증서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1. 12. 31>

제2조(수여대상) ①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내·외국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용인시명예시민증서(이하 “명예시민증서”라 한다)를 수여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12. 31>

1. 국제교류 및 시정시책의 추진에 협력한 사람
2. 문화·예술·체육·과학·기술·경제 등의 분야에서 용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
3.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·참여하여 용인시민(이사 “시민”이라 한다)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
4. 그 밖에 시장이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어 명예시민증서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인사 중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12. 31>

제3조(후보자의 추천) 명예시민증서 수여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추천한다. <개정 2021. 12. 31>

1. 시장
2. 공공기관·단체의 장
3. 1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
4. 19세 이상의 시민 50명 이상

제4조(수여대상자의 결정 등)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

에는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용인시공적심사위원회(이하 “공적심사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21. 12. 31>

② 시장은 우호증진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코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12. 31>

③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용인시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,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수여한 사유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. <개정 2021. 12. 31>

제5조(예우) ①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12. 31>

②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.

제6조(취소)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12. 31>

1.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
2.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할 때

②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용인시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의 수여가 취소된 사람은 제5조에 따른 예우를 취소한다. <개정 2021. 12. 31>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21. 12. 31>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1. 12. 31 조례 제2241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